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799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소장
변 론 종 결	2016. 6. 28.
판 결 선 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과세고지일'란 각 해당 일자에 한 같은 목록 '과세금액'란 각 해당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4. 11. 16. 원고 A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순번 39 '과세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이 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년 11월경부터 2012년 12월경 사이에 주식회사 [redacted](이하 '[redacted]트'라 한다)로부터 [redacted]시 BL 소재 BM건물 중 별지 2 목록 '과세호수'란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건축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2 목록 '과세고지일'란 각 해당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목록 '과세금액'란 각 해당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이하 '원고 A에 대한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머지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E는 이의신청을, 원고들은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redacted] 도지사는 2015. 8. 26. 이의신청을, 조세심판원은 2015. 4. 4., 2015. 5. 26., 2015. 11. 12. 각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 2, 6, 7, 8, 15, 1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원고 A)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46, 47,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1. 16. 원고 A에 대하여 BM건물 859호에 관하여 취득세 1,820,520원, 지방교육세 169,050원, BM건물 1122호에 관하여 취득세 3,068,410원, 지방교육세 306,840원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 원고 A는 2014.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5. 4. 4. 청구 기각 결정을 한 사실, 위 결정의 정본은 2015. 4. 7. 위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의 소는 그로부터 90일 경과된 후인 2015. 8.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한 것인 점, 위 규정의 건축주를 매입임대사업자가 아닌 건설(건축)임대사업자에 한정한다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이를 분양받거나 임차할 실수요자가 없게 되어 임대주택의 건설촉진의 공익을 달성할 수 없는 점, 위 규정의 건축주는 건축법상 건축주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주'에는 기존의 건축물을 '용도변경'한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redacted]트는 단순한 용도변경이 아닌 세대 간의 내력벽, 출입문, 난방, 수도시설 등을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등 건축물에 상당한 구조와 형태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스스로 공사를 시행한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단순한 매입임대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들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감면통지서 및 비과세확인서를 받아 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있는 점,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지는 부동산 취득 여부에 중요한 변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규정의 지방세 감면 취지는 임대주택의 건설촉진을 통한 서민주거의 안정인데 '건축주'의 개념을 건축법에 따라 해석한다면 단순한 공작물의 축조자 등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 등 과세의 형평 등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용도가 다시 용도변경(오피스텔⇔공동주택)된 후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임대사업자에게 재차 감면해주어야 하는 점, '건축주' 개념을 건축법에 따라 해석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의 '최초 분양'의 의미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을 보존등기 후 최초로 수분양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 건축공사 없이 단순히 냉난방·전기·칸막이 공사 등을 통해 용도변경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이 사건 규정의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규정의 지방세 감면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면제요건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가 감면된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redacted] 주식회사(이하 '[redacted]개발'이라 한다)는 2006. 7. 18. 건축허가를 받아 [redacted]시 BL 지상에 'BM'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6층, 지상11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2008. 8. 29.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8. 9.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후 이 사건 건물은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redacted], [redacted] 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주식회사를 거쳐, [redacted]트는 2012. 4. 26. 2011. 1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redacted]트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등기목적	접수일자	등기원인	권리자 등
소유권보존	2008. 9. 19.		[redacted] 주식회사
소유권이전	2009. 9. 28.	2009. 9. 25.자 신탁	주식회사 [redacted]
소유권이전	2011. 6. 29.	2011. 6. 29.자 매매	[redacted] 주식회사(100분의 27.84) [redacted] 주식회사(100분의 28.26) [redacted] 주식회사(100분의 28.22) [redacted] 주식회사(100분의 15.68)
공유자전원 지분 전부이전	2012. 4. 26.	2011. 11. 25.자 매매	[redacted]트
소유권이전	2012. 11. 1.	2011. 10. 31.자 신탁	[redacted] 주식회사
소유권이전	2012. 11. 30.	2012. 11. 30. 신탁재산의 귀속	[redacted]트

3) 한편 2011. 12. 8. 이 사건 건물 901호, 1001호, 1101호는 위락시설(무도장), 운동시설(골프연습장)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로 용도변경되었고, 2012. 1. 31. 이 사건 건물 10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 311.94㎡가 증축되었다.

4) [redacted] 주식회사 외 3인은 2012. 1. 31. [redacted]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였고, 이후 [redacted]트는 2012. 5. 2. [redacted]시장에게 건축주를 [redacted] 주식회사 외 3인에서 [redacted]트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5) 2012. 2. 2. 이 사건 건물 1101호 내지 1104호가 1101호로, 2012. 10. 8. 이 사건 건물 501호 내지 506호가 501호로, 601호 내지 606호가 601호로, 801호 내지 804호가 801호로 각각 전유부합병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6) 이후 2012. 10. 10.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던 이 사건 건물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 1001호, 1101호가 업무시설/오피스텔(501호 내지 559호, 601호 내지 660호), 공동주택/아파트(701호 내지 765호, 801호 내지 865호, 901호 내지 968호, 1001호 내지 1046호, 1101호 내지 1155호)로 용도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5,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규정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건축주'의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의 건축주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이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던 기존의 건축물을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주인 [redacted]트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규정은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짐으로써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이관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건축임대사업자 및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의 촉진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규정은 매입임대사업자가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6조 제5호는 '건축'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건축주'의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③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건축 이외에 용도변경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건축주라는 용어가 반드시 위 규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축주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이외에 용도변경 등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런데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동주택 등을 건축한 자로부터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축물을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로 변경한 자로부터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은 광범위한 임대주택 확보를 통한 주거생활의 안정의 도모라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규정은 건축임대사업자의 경우 공동주택을 건축할 것을,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것을 각각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방세 감면의 대상을 서로 달리 하고 있어 후자의 건축주라는 용어범위를 전자의 "공동주택의 건축"에 종속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건 규정의 조화로운 해석을 해치게 된다.

⑥ 또한 이 사건 규정의 건축주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건축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 건축주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건축주라는 용어에 일반적으로 용도변경 등에 따른 것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의 법문에 반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에 부합한다.

⑦ 나아가 이 사건에서 [redacted]트는 [redacted] 주식회사 외 3인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부터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받아 2012. 10. 10.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서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던 이 사건 건물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 1001호, 1101호를 상당한 구조변경 및 설비공사를 시행하여 업무시설/오피스텔(501호 내지 559호, 601호 내지 660호), 공동주택/아파트(701호 내지 765호, 801호 내지 865호, 901호 내지 968호, 1001호 내지 1046호, 1101호 내지 1155호)로 용도변경하였고, 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은 [redacted]트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초로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판사 박소연

판사 문중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별지 1]

원고 목록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37. AL

38. AM

39. A

40. AN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AX

51. AY

52. AZ

53. BA

54. BB

55. BC

56. BD

57. BE

58. BF

59. BG

60. BH

61. BI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62. BJ

63. BK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별지 2]

목록

순번	성 명	과세호수	과 세 금 액 (원)				과세고지일
			취 득 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 계	
1			5,833,600	583,360	291,680	6,708,640	2015. 6 29.
2			5,731,260	573,120	286,560	6,590,940	2015. 6 29.
			5,731,260	573,120	286,560	6,590,940	2015. 6 29.
			6,601,180	660,110	330,050	7,591,340	2015. 6 29.
3			5,702,730	570,270	285,130	6,558,130	2015. 6 29.
4			6,710,040	625,400	289,900	7,625,340	2015. 6. 8.
5			5,720,510	572,050	286,020	6,578,580	2015. 7. 1.
			5,822,660	582,260	291,130	6,696,050	2015. 7. 1.
6			6,017,050	601,700	300,850	6,919,600	2015. 7. 6.
			6,017,050	601,700	300,850	6,919,600	2015. 7. 6.
			6,017,050	601,700	300,850	6,919,600	2015. 7. 6.
7			6,031,210	603,120	301,560	6,935,890	2015. 6. 8.
8			6,021,300	602,130	301,060	6,924,490	2015. 7. 1.
9			5,959,610	595,960	297,980	6,853,550	2015. 6.29.
10			6,536,170	653,610	326,800	7,516,580	2015. 6. 8.
11			7,516,580	322,300	161,150	3,706,530	2015. 7. 9.
			2,105,710	210,570		2,316,280	2015. 7. 9.
12			3,718,910	371,890	185,940	4,276,740	2015. 6. 8.
13			3,718,910	371,890	185,940	4,276,740	2015. 7. 6.
14			3,716,280	371,620	185,810	4,273,710	2015. 6. 8.
			3,624,470	362,440		3,986,910	2015. 6. 8.
15			3,237,440	323,740	161,870	3,723,050	2015. 8. 9.
16			6,017,950	601,700	300,850	6,919,600	2015. 6. 8.
17			3,805,370	380,530	190,260	4,376,160	2015. 6.29.
18			3,241,980	324,190	162,090	3,728,260	2015. 6.29.
19			2,736,910	273,690		3,010,600	2015. 1. 1.
20			2,993,660	299,360		3,293,020	2015. 6. 8.
			1,674,420	167,440		1,841,860	2015. 6. 8.
21			1,479,110	147,910		1,627,020	2015. 8. 9.
			1,479,110	147,910		1,627,020	2015. 8. 9.
22			3,342,500	334,250		3,676,750	2015. 7. 1.
23			2,334,040	233,400		2,567,440	2015. 7. 6.
24			1,759,630	175,960		1,935,590	2015. 6.29.
25			849,690	84,960		934,650	2015. 6. 8.
26			3,485,740	324,770		3,810,510	2015. 7. 1.
			3,675,170	367,510		4,042,680	2015. 7. 1.
27			3,090,010	309,000		3,399,010	2015. 7. 2.
28			3,599,240	335,520		3,934,760	2015. 6.29.
29			1,820,940	169,690		1,990,630	2015. 7. 6.
30			1,829,120	170,510		1,999,630	2015. 6.29.
31			3,614,860	361,490		3,976,350	2015. 6. 8.
			1,495,750	149,580		1,645,330	2015. 6. 8.
32			1,556,720	155,670		1,712,390	2015. 6.29.
33			3,570,280	357,020		3,927,300	2015. 7.2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순번	성 명	과세호수	과 세 금 액 (원)				과세고지일
			취 득 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 계	
34			4,170,540	388,650		4,559,190	2015. 7. 6.
35			1,848,610	184,860		2,033,470	2015. 1.19.
			1,970,130	197,010		2,167,140	2015. 1.19.
36			2,723,590	253,750		2,977,340	2015. 6. 8.
			3,690,030	343,800		4,033,830	2015. 6. 8.
37			1,967,380	183,330		2,150,710	2015. 7. 9.
			3,460,700	322,470		3,783,170	2015. 7. 9.
38			1,938,420	180,640		2,119,060	2015. 7. 6.
			1,967,790	183,370		2,151,160	2015. 7. 6.
39			1,820,520	169,050		1,989,570	2014.11.16.
			3,068,410	306,840		3,375,250	2014.11.16.
40			3,215,520	321,550		3,537,070	2015.8.9.
			1,165,900	116,600		1,282,500	2015. 6. 19.
41			2,990,820	299,080		3,289,900	2015.6. 8.
42			2,960,320	296,030		3,256,350	2015. 6.29.
43			1,730,700	161,270		1,891,970	2015. 7. 9.
44			3,776,960	377,690		4,154,650	2015. 6.29.
			3,776,960	377,690		4,154,650	2015. 6.29.
45			3,755,640	375,560		4,131,200	2015. 6. 8.
46			3,674,300	367,430		4,041,730	2015. 6. 8.
47			1,951,180	195,110		2,146,290	2015. 6. 8.
48			2,990,120	299,010		3,289,130	2015. 6. 8.
49			1,979,790	197,970		2,177,760	2015. 5. 27.
50			2,301,570	230,150		2,531,720	2015. 8. 8.
51			2,179,750	217,970		2,397,720	2015. 6. 8.
52			2,356,620	235,660		2,592,280	2015. 7. 6.
			2,937,350	293,730		3,231,080	2015. 7. 6.
53			1,416,360	141,630		1,557,990	2015. 7. 1.
54			2,990,120	299,010		3,289,130	2015. 6. 8.
55			2,284,920	228,490		2,513,410	2015. 7. 1.
56			1,759,630	175,960		1,935,590	2015. 6.29.
			1,759,630	175,960		1,935,590	2015. 6.29.
57			1,175,020	117,500		1,292,520	2015. 6.29.
58			1,165,910	116,590		1,282,500	2015. 7. 9.
59			3,244,280	324,420		3,568,700	2015. 6. 8.
60			1,711,040	171,100		1,882,140	2015. 6.29.
61			784,050	78,400		862,450	2015. 6. 8.
62			1,658,800	165,880		1,824,680	2015. 6.29.
			1,658,800	165,880		1,824,680	2015. 6.2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별지 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2.3.21.>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2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끝.